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08년 11월 28일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승관**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2. 기금 운용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년 계획	2008년 운용	증 감 액	증 감 율 (%)
통합관리기금	22,973,688	24,362,974	△1,389,286	△5.70
중소기업육성기금	3,522,000	3,553,359	△31,359	△0.91
합 계	26,495,688	27,916,333	△1,420,645	△5.09

-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에 총 264억 9,5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9%인 14억 2,064만 5천원이 감액되었음.
- 기금별로 살펴보면
 - 통합관리기금은 13억 8,928만 6천원이 감소된 229억 7,368만 8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35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통합관리기금	합 계	22,973,688	합 계	22,973,688
	·예치금회수	21,305,470	·예치금	18,088,910
	·예수금	547,000	·예수금원리금상환	4,884,778
	·이자수입	1,121,218		
중소기업육성기금	합 계	3,522,000	합 계	3,552,000
	·출연금	200,000	·융자금	2,450,000
	·융자금회수	1,802,400	·물건비	1,120
	·예치금회수	1,350,000	·예치금	1,070,880
	·이자수입	169,600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마포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229억 7,368만 8천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13억 547만원, 예수금 5억 4,700만원, 이자수입 11억 2,12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 지출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및 각 기금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8억 8,477만 8천원, 예치금으로 180억 8,891만원을 사용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0.91% 감소한 35억 2,200만원으로 출연금 2억원, 용자금 회수수입 18억 24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5,000만원, 이자 수입 1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출은 민간용자금 24억 5,0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예치금 10억 7,088만원을 사용할 계획임.

3. 검토의견

가.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 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 ① 기금의 재원 조달 목적과 집행 사업간의 적합성 여부
- ② 재원조성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
- ③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융자사업이 불합리한 용자조건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 ④ 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